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김용판 · 김정재
김태호 · 김태흠 · 박덕흠
성일종 · 안병길 · 이채익
조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,000가구로 2015년 대비 4.8%(약 5만 3,000가구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농가인구는 약 231만 7,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%대 선이 붕괴된 4.5%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.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 대도 50대 이상이 75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·추진해 왔지만,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.

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·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, 후계농어업인의 육성·유입을 장려하기

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농·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,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% 분리과세, 2024년 1월 1일 이후 5%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(안 제88조의5).

나. 농·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,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% 분리과세, 2024년 1월 1일 이후 5%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(안 제89조의3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점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30호)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5제1호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5[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(이하 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”이라 한다)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1]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00분의 9”를 “100분의 9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5)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5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0분의 9”를 “100분의 9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
등: 100분의 5

2.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
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울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
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
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
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
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
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
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
하 “조합등예탁금”이라 한다)에
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
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

----100분의 5[「후계농어업인
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
인(이하 “후계농어업인 및 청
년농어업인”이라 한다)이 받는
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0분
의 1]

2. -----
-----100분의 9(후계농
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받
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10
0분의 5)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울과세 등) ① -----

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-----100분의 5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)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100분의 9(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)-----
-----.